변경대비표

변경시행일: 2025년 5월 22일

칸서스튼튼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채권)

규약 변경 내역

1. 펀드명 변경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3. 환매주기 단축

4.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펀드명 변경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1. 펀드명 변경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이라 한다. ②~③ (기재생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동일)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기재생략)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신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2. (기재생략)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4.~9. (기재생략) ② (기재생략) 1.~ 2. (기재생략) **<신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현행과 동일)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2. (현행과 동일) 3. **<삭제>**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4.~9.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2. (현행과 동일)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주기 단축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기재생략)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현행과 동일)
3. 환매주기 단축	제26조(환매연기) ①~⑥ (기재생략)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1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기재생략)	제26조(환매연기) ①~⑥ (현행과 동일)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삭제>**(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4.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1. (기재생략)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신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다.** (조항 순연, 기재 생략)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마.** (조항 순연, 기재 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1. (현행과 동일) 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라.** (조항 순연, 기재생략) **마.**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조항순연, 기재생략)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펀드명 변경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3. 환매주기 단축

4.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6.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8.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펀드명 변경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1. 펀드명 변경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6개월 내외 국내 채권**<신설>**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6개월 내외 국내 채권**(기업어음(CP)포함)**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신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설>**	3. 어음: **<삭제>**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2.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고 통안채 등 국내 채권**<신설>**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 수준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후 6개월 미만의 우량 신용등급의 단기 사채 및 유동성,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고 통안채 등 국내 채권**(기업어음(CP)포함)**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 수준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후 6개월 미만의 우량 신용등급의 단기 사채 및 유동성,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3. 환매주기 단축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1. 이 투자신탁은 MMF와 달리 투자대상, 안정적자산, 잔존만기, 유동성 비율 등 MMF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리스크가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
3. 환매주기 단축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신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환매대응방안>** **① Repo 매도 활용** **- 증권총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Repo 매도 전략을 활용합니다. Repo매도를 통해 유동성 확보, 채권 등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② 기업어음(CP) 투자** **- 환금성이 뛰어난 기업어음 투자를 통하여 유사 시 매도 후 환매 대응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 MMF와의 차이점** (기재생략)

3. 환매주기 단축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2) 위험관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설>** **<신설>**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2) 위험관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환매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예상치 못한 대량 환매 발생 등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단계별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 비율 모니터링 강화 및 환매 영향 분석** **2단계: 추가 환매 가능성 파악 및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 **3단계: 현금화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내부 협의회 개최를 통한 환매 연기 여부 결정, 대고객 대응 및 판매사 협의 조치 등 실시**
3. 환매주기 단축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신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 명칭에 따른 투자자 오인 발생 가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명칭에 '내일드림'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MMF가 아닌 채권형 펀드이며, MMF와 달리 투자대상, 안정적자산, 잔존만기, 유동성 비율 등 MMF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리스크가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
3. 환매주기 단축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1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삭제>**(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 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주석신설>**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주1) 증권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신설>**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신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다**. (조항 순연, 기재 생략)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설>** **마.** (조항 순연, 기재 생략)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라.** (조항 순연, 기재생략) **마.**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조항순연, 기재생략)
6.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5.04.15)**
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반기회계연도 및 2025.04.15)**
8.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기준 및 2025.04.15)**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펀드명 변경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3. 환매주기 단축

4.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5.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펀드명 변경	칸서스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칸서스 **내일드림** 튼튼 단기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 투자대상자산 정의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신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고 통안채 등 국내 채권**<신설>**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 수준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후 6개월 미만의 우량 신용등급의 단기 사채 및 유동성,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고 통안채 등 국내 채권**(기업어음(CP)포함)**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 수준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후 6개월 미만의 우량 신용등급의 단기 사채 및 유동성,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3. 환매주기 단축	주요투자위험 **<신설>**	주요투자위험 **투자신탁 명칭에 따른 투자자 오인 발생 가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명칭에 '내일드림'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MMF가 아닌 채권형 펀드이며, MMF와 달리 투자대상, 안정적자산, 잔존만기, 유동성 비율 등 MMF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편입 종목의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의 리스크가 MMF 보다 큰 상품입니다.**
3. 환매주기 단축	환매방법 • 17시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지급 •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지급	환매방법 • 17시 이전: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지급 • 17시 경과 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지급
4.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5.04.15)**
5.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5.04.15)**